

# 정 정 신 고 (보 고)

2010년 3월 31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4일

3. 정정사유

-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투자신탁 가입자격 변경 (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격 추가)
-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(2009.12.21 시행)사항 반영
-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내용 “과세” 항목 반영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	비고
제 2 부.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제 한	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{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각각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및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{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(2009.12.21 시행)사항 반영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	- 다만, 종류 A-H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만 18 세 이상의 거주	- 다만, 종류 A-H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	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반영하여

<p>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1 조 제 9 항으로 정하는 세대(이하 “세대”라 한다)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)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 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합니다.</p>	<p>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9항으로 정하는 세대(이하 “세대”라 한다)의 세대주</li> <li>2. 소득세법 제99조 제 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(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)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</li> </ol>	<p>정정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(주)</p>	<p>이 투자신탁의 종류A - H 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. 따라서 종류A-H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(다만,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</p>	<p>이 투자신탁의 종류A - H 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. 따라서 종류A-H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(다만,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</p>	<p>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반영하여 정정</p>

	<p>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) 이러한 종류A-H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○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</p> <p>가.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9항으로 정하는 세대(이하 “세대”라 함)의 세대주나,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)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</p>	<p>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) 이러한 종류A-H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○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</p> <p>1.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9항으로 정하는 세대(이하 “세대”라 한다)의 세대주</p> <p>2.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)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</p>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의 이자 원천징수액 환급</li> <li>-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, 취득세,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</li> </ul>	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	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내용 “과세” 항목 반영
(4) 종류A-H 수익증권 관련,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	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반영하여 정정	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반영하여 정정	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반영하여 정정

